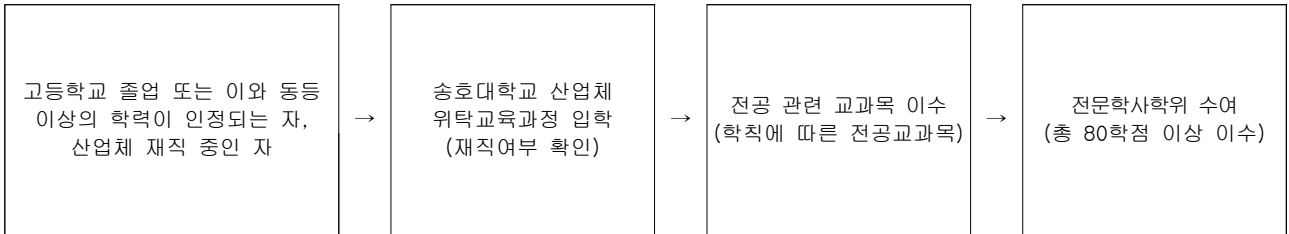


# 2019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입학전형 시행계획

## I 『산업체 위탁교육』 과정 안내

### - 『산업체 위탁교육』 과정 이란?

고등교육법 제40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2항 등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의거 고졸이상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산업체의 장이 전문대학에 그 교육과정을 위탁하여 교육을 하는 제도이며, 산·학·연·관 협력 및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.



## II 입학전형 일정

모집구분	원서접수(창구/인터넷)	합격자 발표	합격자 등록
모집기간	2018.12.29.(토) ~ 2019.01.11.(금)	2019.01.18.(금)	2019.02.11.(월) ~ 2019.02.13.(수)
미등록 총원	2019.02.14.(목) ~ 2019.02.28.(목)	개별통보	개별통보

## III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

모집구분	학과명	모집정원	주간/야간	수업연한
인문사회계열	사회복지과(야)	20명	야간	2년
자연계열	호텔외식조리과	30명	야간	2년
예체능계열	스포츠레저과	33명	야간	2년

## IV 선발기준

- 지원 자격이 있는 직장인이 해당 산업체장과 본 대학과의 위탁교육계약에 의해 의뢰된 자.
  - 해당학과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 순위에 의해 합격자를 선발함.
    - 위탁교육지원 의뢰 인원이 많은 산업체(근무경력이 많은 자 순)
    - 위탁계약 산업체 근무경력이 많은 자(산업체 근무경력이 많은 자 순)
    - 연장자
- ※ 합격자는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, 미등록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과 동시에 예비합격 순위자에게 합격 및 등록에 관한 모든 권한이 부여됨.

## V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

### 1. 자격요건

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, 모집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, 산업체 재직경력 “9개월 이상”인 자 (’19.3.1 입학일 기준) \*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, 고용, 산재) 가입경력 합산

#### 가.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

- 모집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하며,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2019학년도 개시일 전일(’19.2.28)로 함.
- 입학시점(매년 3.1)을 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경력자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.
- ※ 재직경력 9개월 :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(국민, 건강, 고용, 산재) 가입 경력을 합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함.

#### 나. 재직경력이 없는 자

-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,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
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 (’19.2월 졸업예정자 포함)
- ※ 동 과정 입학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(대학-산업체 간 협약 체결 필요)
- 일반계고등학교 재학생 중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아니하고,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위탁기관에서 1년간 직업교육을 실시.
- 위탁직업교육은 산업정보학교, 직업교육거점학교, 폴리텍, 대한상공회의소, 지자체, 전문대 등에서 이루어짐.

### 2. 유의사항

위탁생이 위탁산업체의 동의 없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 위탁계약 해지로 보아 입학 취소 및 제적 처리함. (단, 산업체의 도산,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신분 변동의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위탁교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)  
지원서 등 제출 서류를 변조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 후라도 합격취소 및 제적 처리함.

## VI 제출서류

### 1. 공통서류

- 가.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1부.
- 나. 산업체 위탁교육 입학원서 1부.
- 다.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.
- 라. 재직증명서 1부.

### 2. 재직증명 관련 서류

- 가. 4대보험 가입자 직장인(택1부)
  - 건강보험 자격취득 확인서
  - 국민연금 가입확인서
  -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
  - 기타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
- 나. 4대보험 미가입자 직장인(문의후 지원)
  - 1차 산업종사자(영농인·어업인 등) : 공적증명서(농지원부, 어업인 허가 증명서 등)
  -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, 납세증명서

## Ⅶ 졸업요건

1. 학점이수 : 80학점 이상 이수[2년제]
2. 수업연한 : 2년
3. 『산업체 위탁교육』 과정 학생들은 정규과정 학생들과 동일한 졸업사정에 의하여 졸업을 하며 전문 학사 학위 증서를 수여함.

## Ⅷ 교과목 이수 인정

1. 위탁생의 교과목 이수는 본 대학 학칙에 의하되 전공과목에 해당하는 다음 교과목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 그 해당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.
2. 공인된 직업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동일분야 전공 관련 교과목.
3. 산업체 내 연구소 및 사내훈련기관에서 이수한 일정기간의 연수 및 현장실습과 관련된 전공 관련 교과목.
4. 전문대학 및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전공 관련 교과목(전문대학 및 대학부설 특별과정).
5.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학점 중 전공 관련 교과목.
6. 기능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공 관련 교과목.
7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해당 시험 과목 중 전공 관련 시험과목.
8. 동일 직무에 일정기간 근무한 전공 관련 경력(실형·실습 관련 교과목에 한함).
9. 교육부 공고에 의한 직업교육혁신센터에서의 이수한 전공 관련 교과목.

## Ⅸ 위탁교육의 운영

1. 산업체위탁생은 현재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, 위탁생들은 입학시 **4대 보험 증명서**, 2학기 이후부터는 **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**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. (\*재직 증명 : 4대 보험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를 제출)  
※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이직 또는 퇴직의 경우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처리 함.
2. 본 대학의 학칙을 적용하여 산업체위탁과정을 다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.

## X 위탁교육생의 제적기준

1.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한 경우 원칙적으로 제적처리 하되, 위탁교육생이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(협약)을 체결하여야만 제적처리 아니할 수 있음.
2. 산업체의 도산,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이내 他산업체 이직시 대학 내 「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.
3.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, 대학 내 「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.
4. 채용을 전제로 고교-대학-산업체 간 협약으로 입학한 특성화고교(마이스터고) 졸업자,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 과정 이수자('19.2월 졸업예정자 포함)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.  
※ 위의 3개월,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.

**X****위탁교육의 계약 및 경비부담 납부 방법**

1. 위탁교육계약 : 위탁교육은 본 대학 총장과 산업체장(지역단위 기관장, 지점장 포함)과의 계약체결에 의함.
2. 경비부담 : 해당학과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되,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 요원 활용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음.
3. 납부방법 : 위탁산업체에서 본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일괄납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
■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남산로 210 송호대학교

■ 입학상담실 : 033)340-1041~2 FAX)033)340-1047 □<http://www.songho.ac.kr>